**[별첨] 2**

**임원보수규정**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당사 정관 38조 1항 규정에 따라 임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1. 이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임원이라 함은 명칭여부에 불구하고 주주총회에서 선임되어 회사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이사 및 감사를 말한다.
2. 임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더라도 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근무하는 자는 그 별도의 계약에 의한다.

**제 3 조 【보수의 종류】**

1. 임원의 보수는 기본급, 기본급 이외의 급여(이하 "제수당"이라 한다.) 및 상여금으로 구분한다.
2. 제수당은 이 규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필요한 경우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3. 퇴직금은 별도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제 4 조 【지급일】**

1. 급여는 매월 25일에 지급하며 지급일이 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2. 다만, 필요에 따라 대표이사는 지급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 5 조 【계산기간】**

급여기간은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제 6 조 【일할계산】**

1. 급여를 일할 계산할 때는 월의 대소에 관계없이 월액의 30분의 1로 계산한다.
2. 계산에 있어서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절사한다.

**제 7 조 【신규임원의 급여】**

1. 신규임원의 급여는 발령일로부터 일할 계산한다.
2. 발령일이 15일 이후일 경우의 당해 임원의 급여는 익월 지급일에 지급한다.

**제 8 조 【휴직자의 급여】**

① 휴직 발령 당해 월의 급여는 전액 지급한다.

② 휴직기간 중의 급여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 업무상 상병으로 인한 휴직자에 대하여는 급여 전액을 지급한다.

㉡ 업무 외 상병으로 인한 휴직자에 대하여는 휴직발령 다음 달부터 기본급을 지급한다.

㉢ 기타 사유로 인한 휴직자에게는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회사의 형편상 휴직의 명을 받은 자의 급여는 제2호를 준용한다.

**제 9조 【퇴직 및 사망자 급여】**

1. 임원이 퇴직한 경우, 퇴직 당해 월의 급여는 일할 계산하되, 퇴직 당해 월에 21일 이상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급여 전액을 지급한다. 단, 징계면직자는 퇴직 당해 월의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일할 계산한다.
2. 임원이 사망한 때에는 당해 월의 급여는 전액 지급한다.

**제 10조 【기본급】**

① 기본급은 급여의 기본으로서 그 지급액은 다음에 준하여 정한다.

|  |  |
| --- | --- |
| 직  책 | 급  여 |
| 대표이사 | 연간 500,000천원 이하 |
| 이사 | 연간 300,000천원 이하 |
| 감사 | 연간 300,000천원 이하 |

**제 11조 【정기 상여금】**

1. 당사는 임원에게 기본연봉의 200% 범위 내에서 직급에 따라 년 3회 이상 시기를 정하여 분할하여 정기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지급시마다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그 금액을 확정한다.
3. 본 규정에 의한 상여금이 확정되는 시점에 근무하는 임원에 한하여 지급한다.

**제 12조 【성과 상여금】**

1. 당사는 임원에게 전년도 순이익의 50% 범위 내에서 임원의 직급에 따라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지급시마다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그 금액을 확정한다.

**제 13조 [정기상여금 및 성과상여금의 확정시기]**

정기상여금 및 성과상여금은 본 규정 제11조 제②항 및 제12조 제②항에 의한 이사회 결의일에 확정된 것으로 한다.

**제 14조 [정기상여금 및 성과상여금의 지급시기]**

정기상여금 및 성과상여금은 본 규정 제13조에 의해 확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 15조 [규정의 개폐]**

본 규정은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하여서만 개폐가 가능하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2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 주주총회결의일로 일치시킴

**제2조 [경과규정]** 본 규정 시행 이전에 선임된 임원도 본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제3조 [적용시기]** 이 규정은 본 규정 시행이전의 근속기간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한다.

**[별첨] 3**

**임원퇴직금지급규정**

**제 1 조 【 목적 】**

이 규정은 당사 정관 38조2항 규정에 따라 임원의 퇴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 임원의 정의 】**

① 이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임원이라 함은 명칭여부에 불구하고 주주총회에서 선임 되어 회사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이사 및 감사를 말한다.

② 임원고용계약서에 의하여 별도의 연봉계약을 체결한 임원의 경우는 이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제 3 조 【 지급조건 】**

이 규정의 퇴직금은 근속기간 만 1년 이상의 임원이 퇴직할 경우에 지급한다. 이 때 퇴직의 정의는 법인세법상의 ‘현실적 퇴직’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지급 한다.

① 임기만료 퇴임

② 사임

1. 재임 중 사망

④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사유로 인한 퇴직급여 중간정산

**제 4 조 【 퇴직금의 산정 】**

1. 임원의 퇴직금 지급액 산정은 퇴직직전 3년간의 총급여를 기준으로 [퇴직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3년 동안 지급받은 총급여액의 연평균 환산액 x 1/10 × 근속연수 × 지급률]으로 한다.
2. 지급률 적용은 아래의 지급률을 각각 구분해서 적용한다.

* **직급별 차등 / 근무년수별 차등 지급배수 설계가능 (지급규정상 배수 결정은 회사 재량)**

**[예시 1] 직급별 동일 배수 적용**

|  |  |
| --- | --- |
| 임원 직급 | 지급률 |
| 대표이사 | 3 |
| 이사 | 3 |
| 감사 | 3 |

**[예시 2] 직급별 차등 배수 적용**

|  |  |  |
| --- | --- | --- |
| 임원 직급/근속년수 | 지급률 | |
| 5년 미만 | 5년 이상 |
| 대표이사 | 3 | 3 |
| 이사 | 2 | 2.5 |
| 감사 | 1.5 | 2 |

**제 5 조 【 근속기간의 계산 】**

1. 전체 근속기간은 임원으로 선임된 일자로부터 실근무 종료일까지로 한다.
2. 사용인에서 임원이 된 경우 해당시점 퇴직금 정산을 기본으로 하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인으로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과 임원이 된 이후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임원퇴직금지급규정 적용)을 구분하여 계산한다.
3. 근속기간 계산은 무보수근속기간, 휴직기간 등을 모두 포함한 재직기간으로 한다.
4. 근속기간은 개월 수로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개월로 본다

**제 6 조 【 퇴직금의 지급방법 】**

퇴직금은 현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퇴직한 자의 요청 또는 동의가 있는 경우 현금 외의 회사의 자산 (재고자산, 금융자산, 유가증권, 보험증권, 고정자산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 때 퇴직금으로 지급되는 현금 외의 자산의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다.

**제 7조 【 지급제한 】**

임원이 주주총회 해임결의, 법원의 해임 판결 또는 징계해임을 통하여 퇴직한 경우에는 본 규정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8조 【 규정의 개폐 】**

본 규정은 정관의 일부로서 존재함으로 규정의 개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서만 가능함을 확인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2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규정]** 본 규정 시행 이전에 선임된 임원도 본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제3조 [적용시기]** 이 규정은 본 규정 시행이전의 근속기간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한다.